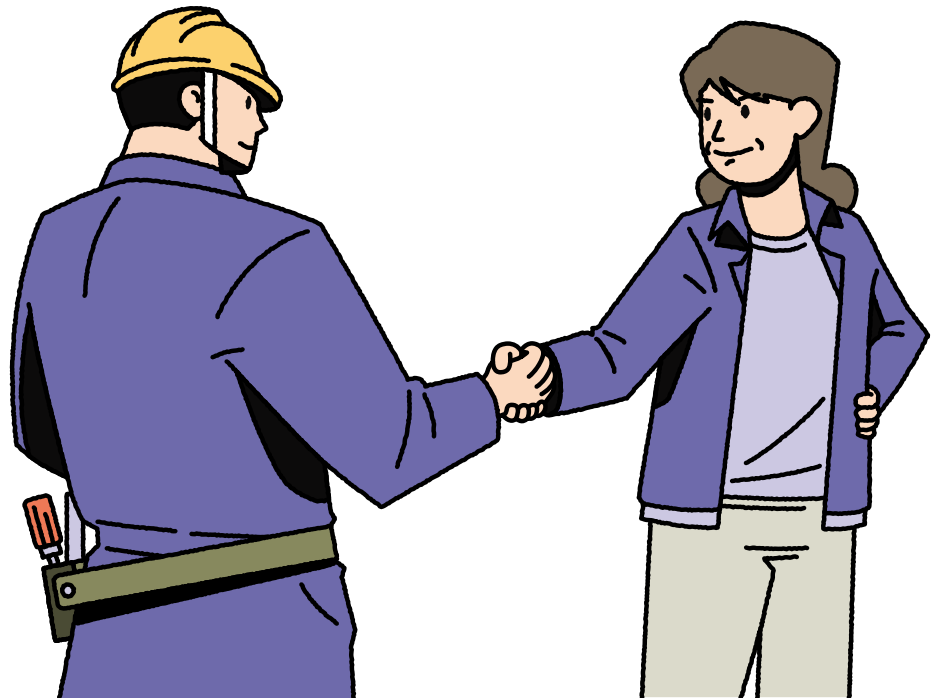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12 산업재해 예방



CONTENTS

알쏭달쏭 산업재해, 알고 갑시다!

- SAFETY CHECK 01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 SAFETY TIP 06

권리에 의무를 더해 완성하는 산업안전

- SAFETY NOW 12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산업재해 현황

- SAFETY GRAPHIC 0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 SAFETY ISSUE 08

정책 홍보 BOX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다 도와드릴! 13

- 세종시티엠 & 세종안심이 13

산업현장 필수 안전수칙

- SAFETY MANUAL 04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영구 건설지원부장

- SAFETY INTERVIEW 10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 사고로 88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법들이 제정 및 개정됐으나,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산업현장의 모든 기기나 장치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비를 다룰 수 없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특성이 재해와 연관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모든 시스템과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또한 규제나 벌칙 등을 통해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가할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삼중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서는 소통과 배려로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람 중심의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열두 번째 이야기, '산업재해 예방'편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구축되길 염원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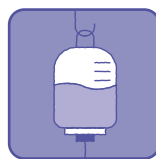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산업재해 관련 용어지만 하나하나 뜯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면 산업재해의 위험은 줄이고 만에 하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주요 용어



산업재해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자료 출처 | 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대사전, 2004, 최상복

알아두면 쓸모있는 산업재해 보상 Q&A

Q 산재 신청,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 **NO!**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산재신청을 요청하지만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Q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YES!**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성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산재 신청, 곧바로 신청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3년이내라면 가능!**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자주 헛갈리는 산재 Q&A, 올바른인사노무컨설팅

산업재해, 겪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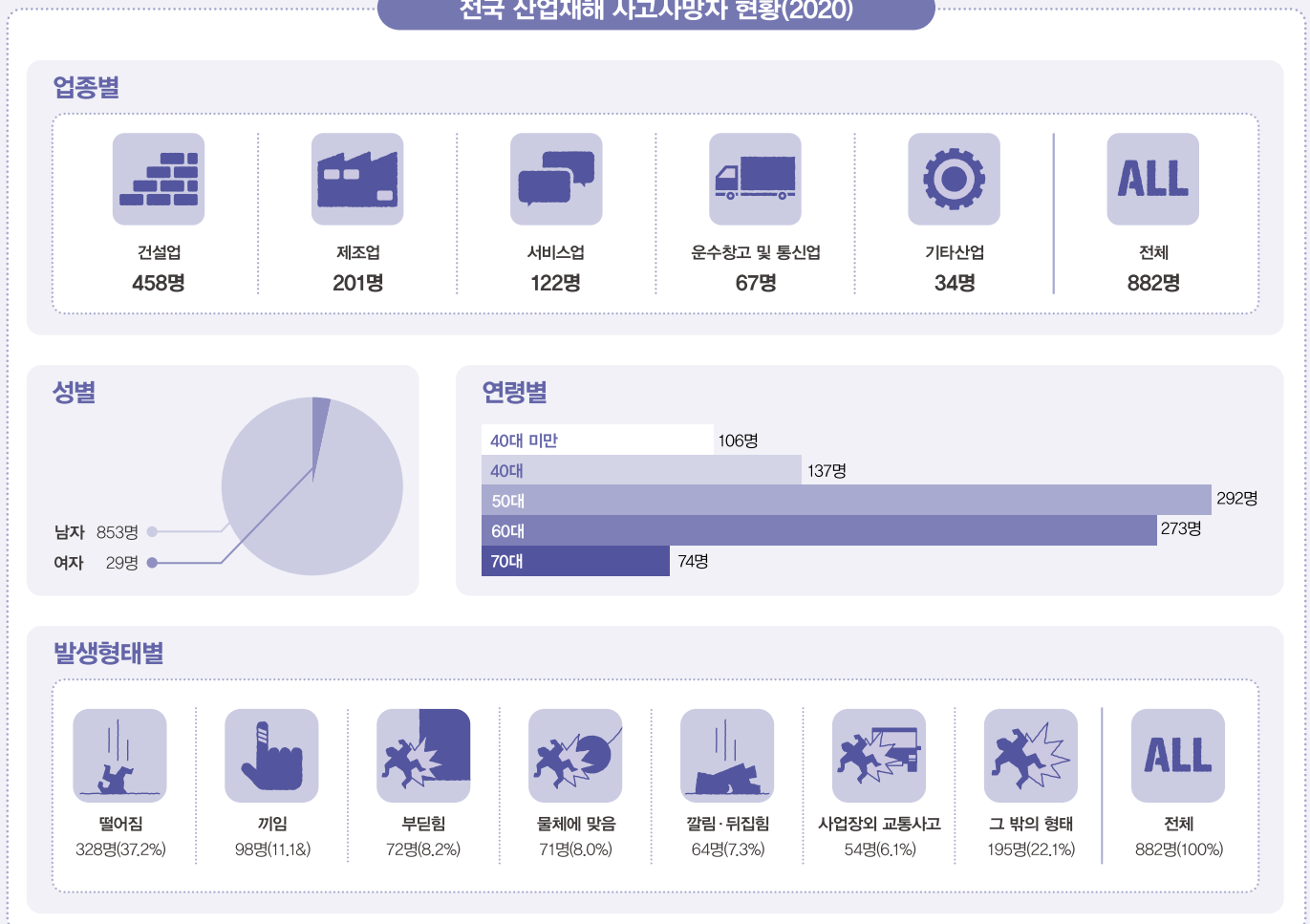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산업재해를 겪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자료 출처 | 통계로 보는 2020년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산업재해 발생현황 총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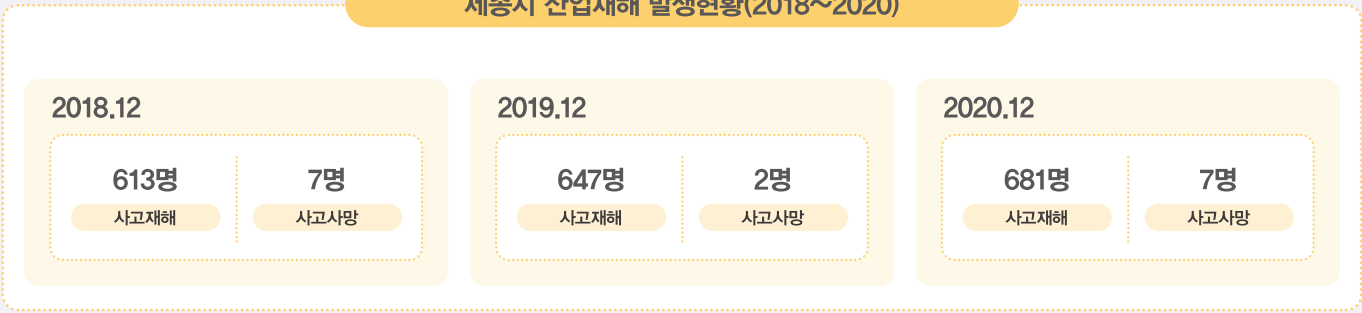
전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2020)



* 재해율: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의 지표로 전체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냄[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세종시 산업재해 발생현황(2018~2020)



세종시 업종별 사고재해 현황(2018~2020)

단위: 명

사고 재해자 현황

| | 2018.12 | 2019.12 | 2020.12 |
|-------|---------|---------|---------|
| 제조업 | 76 | 112 | 103 |
| 건설업 | 324 | 277 | 242 |
| 기타사업* | 213 | 258 | 336 |

사고 사망자 현황

| | 2018.12 | 2019.12 | 2020.12 |
|-------|---------|---------|---------|
| 제조업 | - | - | 1 |
| 건설업 | 7 | 1 | 5 |
| 기타사업* | - | 1 | 1 |

* 기타 사업 :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

세종시 발생형태별 사고 재해자 현황(2018~2020)

단위: 명

| | 제조업 | | | 건설업 | | | 기타 사업 | | |
|--------------------------|---------|---------|---------|---------|---------|---------|---------|---------|---------|
| | 2018.12 | 2019.12 | 2020.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18.12 | 2019.12 | 2020.12 |
|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11 | 8 | 11 | 119 | 82 | 73 | 15 | 20 | 29 |
|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12 | 20 | 17 | 47 | 58 | 42 | 76 | 55 | 79 |
| 깔림·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3 | - | 1 | 5 | 5 | 9 | 1 | 7 | 10 |
|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7 | 10 | 8 | 33 | 26 | 21 | 16 | 23 | 31 |
| 물체에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4 | 12 | 8 | 27 | 30 | 32 | 10 | 10 | 12 |
|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 | 2 | - | 3 | 5 | 4 | - | - | 1 |
|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22 | 33 | 37 | 27 | 24 | 25 | 17 | 14 | 15 |
| 절단·베임·찢림 | 5 | 9 | 10 | 24 | 30 | 26 | 17 | 28 | 25 |
| 감전 | 1 | - | - | 1 | 1 | - | - | - | 1 |
| 폭발·파열 | 1 | - | - | - | 1 | - | - | - | - |
| 화재 | 2 | - | 2 | 25 | - | - | 1 | - | - |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3 | 8 | 1 | 10 | 13 | 7 | 6 | 13 | 17 |
| 이상온도 접촉 | 4 | 4 | 4 | 2 | 2 | 2 | 9 | 33 | 23 |
| 화학물질누출·접촉 | 1 | 2 | 2 | - | - | - | - | 2 | 2 |
| 사업장외 교통사고 | - | 3 | 1 | 1 | - | - | 37 | 43 | 79 |
| 체육행사 등의 사고 | - | - | 1 | - | - | - | 7 | 7 | 7 |
| 폭력행위 | - | 1 | - | - | - | - | - | 2 | 2 |
| 동물상해 | - | - | - | - | - | 1 | 1 | 1 | 3 |

산업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약속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짐작하듯 '상황'이란 바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안전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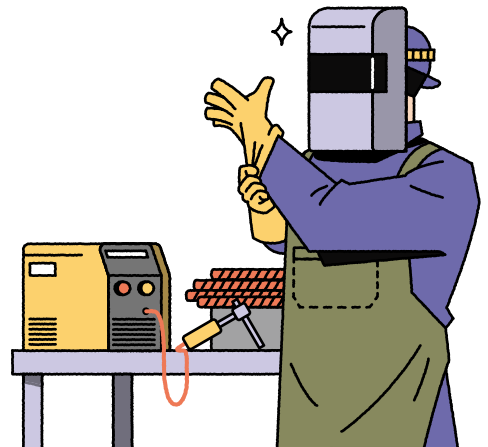
● 근로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꼭 참석하세요. 아는 만큼 안전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으로 안전을 착용해요

● 근로자



보호구를 착용하면 안전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안전보호구 착용으로 내 안전은 스스로 지켜요.

빠른 신고로 피해를 줄여요

● 근로자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서 피해를 줄여요.

뽑으면 위험도 뽑혀요

● 근로자



사용하지 않는 전기장비는 플러그를 뽑아 두고, 전선을 잘 정돈해서 통행 시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한 사무실을 위한 수칙

- 캐비닛이나 서랍장은 과도한 힘을 주고 열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닫아둡니다.
- 캐비닛이나 서랍장은 벽에 잘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각진 부분에는 보호 덮개를 설치합니다.
- 가위나 칼 등 위험한 사무용품은 사용에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 계단 이용 시 핸드레일을 잡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합니다.

좋은 건 알려야 안전!

● 사업주



정기교육은 물론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작업 전에도 특별안전보건교육 진행은 필수입니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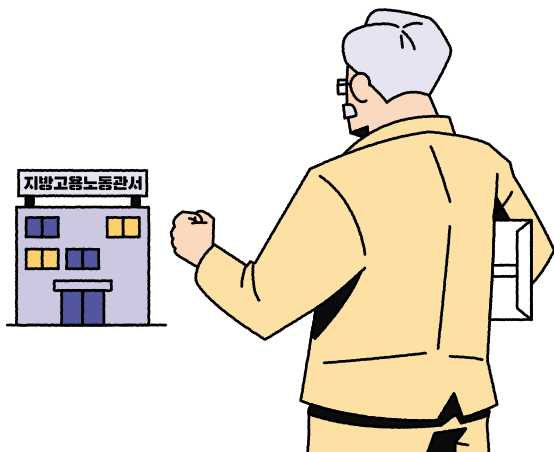
● 사업주



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소중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재해, 잊지 말고 보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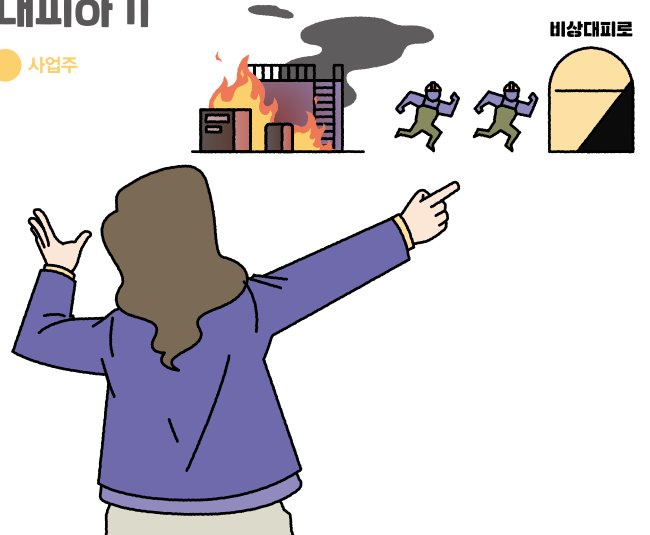
● 사업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자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함께' 안전으로 대피하기

●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모든 근로자가 함께 안전하도록 신속히 대피시킵니다.

피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안전하다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요령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안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TIP. 01 근로자 행동요령



작업 중지 및 긴급대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신고 및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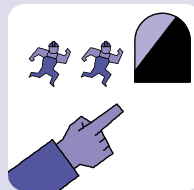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부(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TIP. 02 사업주 행동요령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및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TIP. 03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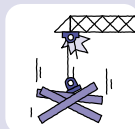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입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해당 공정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 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접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주요 안전보건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산업안전을 위한 필수 지침, '안전보건표지'를 알아봅시다

1. 금지표지

| | | | | | | | |
|---|---|---|---|---|--|---|---|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
|---|---|---|---|---|--|---|---|

2. 경고표지

| | | | | | | | |
|---|---|---|--|---|---|--|--|
| 인화성물질 경고  | 산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  | 급성독성물질 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매달린 물체 경고  |
| 낙하물 경고  | 고온 경고  | 저온 경고  | 몸균형 상실 경고  | 레이저광선 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 위험장소 경고  | |

3. 지시표지

| | | | |
|---|---|---|---|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 안전모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
| 귀마개 착용  | | | |


4. 안내표지

| | | |
|---|--|--|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 비상구  |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  | 들것  |
| 비상용기구  | | |

5. 관계자의 출입금지

| | | |
|---|--|--|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

6. 문자추가시 예시문



취발유화기입금
0.25d 이상

-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들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
|---|---|---|
|  |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
|---|---|---|
|  |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 이행에 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 대상 및 내용

| | |
|---|--|
|  | <p>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p>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


손해배상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
|---|---|

적용범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

시행시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주요 안전보건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 재해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 사용 시 2.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3. 환기·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 처벌수준 | 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만 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10억만 원 이하 벌금 |



INTERVIEW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영구 건설지원부장

안전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위해...

해마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장받지 못한 안전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영구 건설지원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운숙 (이하 이작가) |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구 부장 (이하 이부장) | 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구라고 합니다.

이작가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어떤 곳인가요?

이부장 | 1987년 12월 9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출범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대전세종광역본부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 일부인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관할인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체 재해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거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심사를 하고요.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작가 | 세종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으신가요?

이부장 | 세종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심사를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확인, 페트를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함께 안전 캠페인도 진행하고요. 세종시 공무원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작가 | 산업재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되는데,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이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2조에 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이작가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어떤 건가요?

이부장 | 작년 우리나라에 추락, 낙하, 감전, 붕괴 같은 사고로 88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건설 재해로 458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의 51.9%가 건설재해로 사망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건설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 재해입니다.

이작가 |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있나요?

이부장 | 11월, 12월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 돌관작업(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작가 |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부장 |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 재해의 70% 정도가 발생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안전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작가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이부장 | 노동자들은 사업주나 현장 소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현장 소장은 현장에 난간이나 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들을 꼼꼼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들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작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부장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들의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의 안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의 어느 공원에서 안전 덮개 설치 미비로 시민이 사망하게 됐다면 관리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때문에 시민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작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등 법 규정 곳곳에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이 많아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타 산업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건설업계에서는 '자칫 범법자 양산이란 처벌법'이라며 이 법안의 순위와 처벌이 지나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3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작가 |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부장 | 건설 분야의 산업재해 70%가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 덮개나 안전 난간, 작업 발판,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보건 지킴이'분들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작업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시 현장 점검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작가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세요.

이부장 | 노동자들은 철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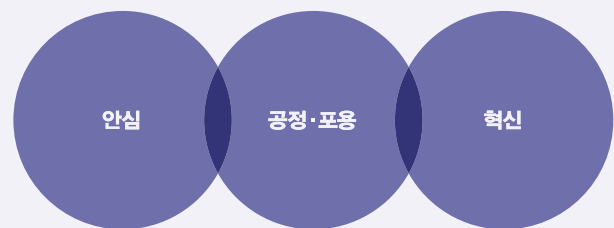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소개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산업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재정 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자료의 개발·보급,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협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업 수행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

| | | | |
|--------------------------------|-----------------------------|------------------------------|------------------------------------|
| 사고사망만인율 0.24% ⁰⁰ | 일자리 창출 27천명 동반성장 우수등급 | 新安전 사업장 구축 (한국판 안전 뉴딜 지원) | 미래 산재예방 플랫폼 구축 고객만족도 우수등급 |
|--------------------------------|-----------------------------|------------------------------|------------------------------------|

전략 목표

| | | | |
|---------------------|---------------------|------------------|---------------------|
| 대국민 혁신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민중심의 공공가치 성과 창출 | 포용적 산업 안전망 확대 | 대국민 혁신 서비스 기반 구축 |
|---------------------|---------------------|------------------|---------------------|



SAFETY NOW | 권리에 의무를 더해 완성하는 산업안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위해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권리에 의무를 더해야 완성되는 산업안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2020년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하루에 2.4명의 근로자가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지표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미흡한 안전 조치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임에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 못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입고 있는 손해 또한 막심하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 9,841억 원이며 근로손실일수는 5,534만일이나 된다. 반대로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가져온다.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 OSHA)이 지난 2014년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결과, 13곳 중 11곳이 4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2곳도 작업 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지워진 책임을 더 강화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¹⁾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혔다.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나 형식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된다. 최근 기업의 EGS²⁾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³⁾가 EGS의 기본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가 됐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면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하면 된다. 2018년~2020년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52.7%),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 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도·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이었다.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 현장에서 각종 재해에 노출된 이상 근로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돼 산업재해는 물론 그로 인한 사망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1)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2)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3)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08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다 도와드립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현장지원단이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대상
제조업 50~299인 사업장

단계별 운영절차 및 주요 지원 내용

1단계: 자율진단

-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
- 관할 지청에서 자율진단 관련 상시 유선 상담 진행

2단계: 현장 컨설팅

- **현장 컨설팅**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컨설팅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

3단계: 사후관리

-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지원

문의 •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을 소개합니다.

세종시티 앱
시민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티앱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으로 안전분야를 포함한 시정 전반에 직접 참여 가능한 앱입니다.

세종안심이
세종안심이가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세종안심이는 SOS호출 기능과 지도·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안전 지원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버튼·흔들기 SOS 호출을 통해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세종시티앱', '세종안심이'를 검색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행일 2021년 12월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